

1. 개정이유

운행기록장치 자료 제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송 장치를 USB 뿐만 아니라 블루투스 등 근거리 무선통신장치 등으로 다양화하고,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화에 따라 관련 기준을 정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차량의 운행정보를 운행기록 분석장치로 전송하는 장치를 현재의 USB 단일 기준에서 블루투스 등 근거리 무선통신장치로 확대하여 소비자 및 제작업체 등의 선택권을 확대함(별표4)
- 나.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화에 따라 운행기록 배열순서 자동차 유형에 어린이통학버스, 기타 유형 등을 추가함(별표5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해당없음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4 및 별표5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운행기록장치의 기준 등(제29조의3제1항 관련)

가. 운행기록장치는 다음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6) 영상기록 보조장치는 필요한 경우에 추가할 수 있다.

- 1) 단말기에 장착되어 그 성능이 1Hz이상인 위치추적장치
- 2) 6개월 이상 1초 단위 데이터를 기록·저장할 수 있는 기억장치
- 3) 운행정보를 운행기록 분석장치로 전송하기 위하여 범용적으로 유통되는 이동식 기억장치 유선인터페이스 또는 근거리 무선통신장치
- 4) 사용자가 현 운행상태를 확인하고 사용자 정보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장치 또는 프로그램
- 5) 운행기록장치 내부 데이터가 인위적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하고, 분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안장치
- 6) 영상기록 보조장치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.

- 가) 운행기록장치에 영상기록장치의 차량정보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장치
- 나) 운행기록장치 내에 영상카메라와 연결되어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

나. 운행기록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5), 6), 7) 기능은 필요한 경우에 추가할 수 있다.

- 1) 차량속도의 검출
- 2) GPS를 통한 위치추적
- 3) 입력신호 데이터의 저장
- 4) 기기 및 통신상태의 오류검출
- 5) 분당 엔진회전수(RPM: Revolution Per Minute)의 감지
- 6) 브레이크 신호의 감지
- 7)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충격감지

다.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의 장치 및 기능의 세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.

운행기록의 배열순서(제30조제2항 관련)

항 목		자릿수	표기방법	표기시기
운행기록장치 모델명		20	오른쪽으로 정렬하고 빈칸은 '#'으로 표기	최초 사용 시 등록
차대번호		17	영문(대문자)·아라비아숫자 전부 표기	"
자동차 유형		2	11: 시내버스 12: 농어촌버스 13: 마을버스 14: 시외버스 15: 고속버스 16: 전세버스 17: 특수여객자동차 21: 일반택시 22: 개인택시 31: 일반화물자동차 32: 개별화물자동차 41: 비사업용자동차 51: <u>어린이통학버스</u> 98: 기타1 99: 기타2	"
자동차 등록번호		12	자동차등록번호 전부 표기 (한글 하나에 두 자리 차지, 빈칸은 '#'으로 표기)	"
운송사업자 등록번호		10	사업자등록번호 전부 표기 (XXXYYZZZZ)	"
운전자코드		18	운전자의 자격증번호로, 빈칸은 '#'으로 표기하고 중간자 '-'는 생략	자동차 운송사업자 설정
주행거리 (km)	일일주행거리	4	00시부터 24시까지 주행한 거리 (범위: 0000~9999)	실시간
	누적주행거리	7	최초등록일로부터 누적한 거리 (범위: 0000000~9999999)	"
정보발생 일시		14	YYMMDDhhmmssss (연/월/일/시/분/0.01초)	"
차량속도(km/h)		3	범위: 000~255	"
분당 엔진회전수(RPM)		4	범위: 0000~9999	"
브레이크 신호		1	범위: 0(off) 또는 1(on)	"
차량위치 (GPS X, Y 좌표)	X	9	10진수로 표기 (예: 127.123456*1000000⇒127123456)	"
	Y	9		
위성항법 장치(GPS) 방위각		3	범위: 0~360 (0~360°에서 1°를 1로 표현)	"
가속도 (m/sec ²)	ΔV_x	6	범위: -100.0~+100.0	"
	ΔV_y	6		

비고

1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48조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또는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8조의8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없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운전자코드란에 18자리 중 10자리는 ‘#’으로 표기한다. 이 경우 11자리는 1대의 자동차에 여러 운전자가 운전할 때의 순번이며, 12자리부터 18자리는 운전자의 사번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로 표기한다.
2. 차량위치는 정보저장 단위시간별로 차량이 위치한 지점으로써 X좌표는 경도로, Y좌표는 위도로 표기한다.
3. 연료소모량과 연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는 운행기록항목에 연료소모량과 연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따로 추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료소모량과 연비에 대한 자릿수와 표기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.
4. 분당 엔진회전수(RPM), 브레이크 신호, 가속도 (m/sec²)는 해당 기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 가속도 Gx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인 종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속도이고, 가속도 Gy는 자동차의 좌우측인 횡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속도를 말한다.